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감사원 출신 공무원의 감사위원 임명 제한〉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826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건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12.
3. 회 부 일 : 2025. 3.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회의의 위원으로서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의 확인,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 판정, 공무원의 파면 등 징계 요구에 대한 사항 등의 심의·결정에 참여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 사무총장을 포함한 감사원 소속 직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3년간 감사위원 임명을 제한함으로써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는 감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안 제7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결격사유) 감사원 소속 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감사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 감사위원은 「대한민국헌법」 제98조¹⁾ 및 이 법(「감사원법」) 제5조·제11조에 따라 감사원의 주요 업무 사항을 의결하는 감사위원회회의의 구성원인 정무직·차관급²⁾ 공무원으로, 이 법은 감사위원의

- 1) 「대한민국헌법」 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2) 「감사원법」 제5조(임명 및 보수) ②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보수는 국무총리의 보수와 국무위원의 보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장 및 의결) ① 감사위원회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의장이 된다.
- 제12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회의에서 결정한다.
1.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1조에 따른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제32조에 따른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시정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6. 제34조에 따른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7.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 등에 관한 사항
 8. 제36조·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재심의를 관한 사항
 9. 제41조에 따른 결산검사보고 및 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에 관한 사항
 10.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자격, 신분보장, 겸직금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제7조부터 제10조까지³⁾)을 두고 있으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정무직공무원인 감사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⁴⁾ 결격사유·당연퇴직⁵⁾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11. 제49조에 따른 의견 표시 등에 관한 사항
12. 감사원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13. 감사원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4. 제28조에 따른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5. 제50조의2에 따른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② 제1항제5호·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원장이 처리한다.

- 3) 「**감사원법**」 제7조(임용자격)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임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제8조(신분보장)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되며,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한다.
- 제9조(겸직 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의 직
 3. 이 법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
 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 제10조(정치운동의 금지)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 1. -2025. 10. 현재) 15인의 감사위원⁶⁾이 임명되었고 이 중 7인이 감사원 출신 공무원이었으며, 9인이 법조인, 교수, 공무원(감사원 외) 경력자인 것으로 확인됨.

<2015. 이후 임명된 감사위원 현황>

성명	재임기간	경력
김영호	2015. 7. 22. - 2015. 11. 15.	공무원(감사원)
정길영	2015. 11. 16. - 2019. 11. 15.	공무원(감사원)
김상규	2016. 2. 18. - 2020. 2. 17.	공무원(감사원 외)
이준호	2016. 4. 4. - 2020. 4. 3.	법조인
김진국	2017. 7. 5. - 2021. 3. 4.	법조인
강민아	2018. 3. 7. - 2022. 3. 6.	교수
손창동	2018. 3. 7. - 2022. 3. 6.	공무원(감사원)
유희상	2019. 11. 16. - 2023. 11. 15.	공무원(감사원)
임찬우	2020. 2. 18. - 2024. 2. 17.	공무원(감사원 외)
조은석	2021. 1. 18. - 2025. 1. 17.	법조인
김인회	2021. 12. 6. - (현직)	교수
이미현	2022. 4. 18. - (현직)	교수
이남구	2022. 4. 18. - (현직)	공무원(감사원)
김영신	2023. 11. 16. - (현직)	공무원(감사원)
유병호	2024. 2. 18. - (현직)	공무원(감사원)
백재명	2025. 1. 18. - (현직)	법조인

자료: 감사원

제3조(적용 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각 호 생략)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각 호 생략)

6) 다만, 감사위원회회의의 구성원 중 감사원장은 제외함.

□ 「대한민국헌법」 제100조⁷⁾가 감사위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법에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할지의 여부 및 결격사유의 구체적 내용의 형성은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보임.

○ 실제로 「대한민국헌법」 제101조제3항⁸⁾은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4호⁹⁾는 동 개정안과 유사하게 특정 기관(대통령비서실)에서 퇴직한지 일정 기간(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감사원에서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감사위원 임용을 제한하려는 개정안은 감사원 근무 경력과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사이의 관련성, 감사원 퇴직 공무원의 공무담임권 제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감사원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감사위원 임명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여,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7) 「대한민국헌법」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8)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9) 「법원조직법」 제4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내용일 뿐만 아니라 감사의 전문성 확보 저해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055